

● 제290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2. 19.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I. 규칙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박순규 의원 외 9명 찬성)
- 나. 제안일 : 2019. 10. 15.
- 다. 회부일 : 2019. 10. 22.
- 라. 의안번호 : 105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규정함에 따라 이를 청원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청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2013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4년 8월 시행)된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서울 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에 반영하고자 제안됐음.

2 청원소개의견서와 청원철회요구서에서 청원인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 등을 규정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해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2011년 제정됐음.
-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도 대량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후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유출 사고를 초래한 대기업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국민의 불안 가중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이 우려돼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기업 등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2013년 8월 통과시킨 바, 이후 민간사업자는 물론 모든 공공기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 특히 법은 고유식별정보 중 하나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①정해진 법령·규칙¹⁾에서 구체적으로 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②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음(제24조의2).

- 이와 관련해 현행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고자 제출하는 ‘청원소개건의서’(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와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제출하는 ‘청원철회요구서’(제12조, 별지 제2호 서식)에 청원인의 개인정보(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운영 중임.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법 개정 사항을 현행 규칙에 반영해 청원인의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해당 기재란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합당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울시의회 청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합당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한한다(제24조의2제1항제1호).